

인재모집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21세기 교육·학술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정규직)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수행직무는 모집분야별 주요 업무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규모 및 분야

○ 채용규모 : 총 2명

- 정규직 : 2명

선발직렬	채용분야	채용 직급	채용 규모	주요업무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AI·빅데이터	원급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분야의 AI기술 도입 연구와 서비스 기획·구축·운영• 빅데이터 활용 연구와 서비스 기획·구축·운영
합계		2명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필수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필수 자격요건	기타사항 및 관련근거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며, 전공, 어학성적 등에 관계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문학사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고졸자로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원 인사규정 제15조 및 별표2호 <임용자격 기준> 준용

※ 고졸자는 우리 원 인사규정 '임용자격기준' 중 '수행업적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항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문을 준용

나. 공통 우대사항

○ 채용분야 관련 연구실적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인공지능 교육^{*} 관련 연구실적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으로 인공지능 원리와 개념, 데이터 분석, AI 알고리즘, 인공지능 관련 수학(통계, 확률 등) 타교과 융합 등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평가 등의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연구실적 또는 업무 경력을 의미

- 인공지능 기술^{*} 관련 연구실적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머신러닝(딥러닝 포함),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마이닝, 자연어처리,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음성합성, (고성능)컴퓨팅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응용 개발 등 인공지능 관련 연구실적 또는 업무 경력을 의미

- 빅데이터 분석 기술^{*} 관련 연구실적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소셜빅데이터(소셜네트워크) 분석 이론, 정보통신 기반의 통계 및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시각화, 빅데이터 H/W 구성 및 플랫폼 구성, 통계 기반 분석 이론, 온라인미디어 특성 연구를 통한 교육 분야 소셜빅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연구 및 기획, 구축 및 운영 등 빅데이터 관련 연구실적 또는 업무 경력을 의미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원서 마감시간(9월 21일 18:00)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PDF)하고 등기우편(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9월 21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채용시험 가점비율과 제출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한함

○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 대구·경북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미취업자(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다문화가족 등은 우대점 부여

※ 본 채용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분야별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므로 대구·경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가점 및 우대점 근거 및 인정기준] : 아래항목 중 최고 점수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가점 및 우대 구분	이행근거	이행방안
가점 적용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가점부여가 명시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면접전형(1차·2차) 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우대점 적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3급 이상)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 등)	면접전형(1차·2차) 시 만점의 1% 가점 부여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대구·경북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면접전형(1차·2차) 시 만점의 2% 가점 부여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면접전형(1차·2차)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등의 책임)	
인정 기준	구 분	인정기준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한국사능력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 보유자	
	경력단절여성	혼인 · 임신 · 출산 ·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근무 경력(5개월 이상)이 있는 자	
	이전지역 (대구 · 경북)인재	대구 · 경북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인 자. 다만, 이전지역(대구 · 경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는 제외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재학 · 휴학중인 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 국적취득사실이 있으며 TOPIK II 6급 자격을 보유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에 대한 세부기준은 【붙임 1】 참고

3. 응시방법

- 가. 원서접수 : KERIS 채용홈페이지(keris.saramin.co.kr)의 '채용공고'에서 등록
- 나. 접수기한 : 2020년 9월 21일(월) 18:00까지 온라인 제출
- 다.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온라인 등록 및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채용분야	관련사항	비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장애인 등은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경력사항에 필수 입력• 지원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술서는 홈페이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입사지원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선택사항)•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p>※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붙임 2] 참고)</p>	기재착오 및 누락시 가점부여 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하위기재가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서 마감시간 (9월 21일 18시)까지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등록(PDF)하고 등기우편(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빙서류에 제출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채용시험 가점비율 기재 필수

4. 근무 조건

- 가. 채용직급 : 원급

※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관 제규정 위반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연봉,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 우리 원 정규직 관련 내규에 의함

※ 세부내용은 알리오(ALIO) 참고

- 다. 근무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라.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원칙

5. 전형절차 및 주요일정

-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1차 면접 전형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2차 면접전형에서 최종합격자 선발

- ※ 서류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 면접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2차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면접 결과 고득점자 → 직업기초능력 면접 결과 고득점자) → 1차 면접전형(전문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 기초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차 면접) 포트폴리오 기반 역량 심화 면접으로 사전에 제공되는 주제에 관한 포트폴리오 작성 후 면접 당일 발표 평가 진행(PT능력 100점)
 - * 상세 일정 및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2차 면접)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직업기초능력(50점) 및 직무 수행능력(50점) 면접을 통합하여 진행

나. 주요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차 면접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발령
9월 21일 18:00까지	9월 29일	10월 7일 ~ 10월 8일	10월 12일	10월 15일 ~ 10월 16일	10월 21일	10월 30일 (예정)

※ 상기 전형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면접전형(1차) 시 서면제출, 본인 확인 및 진위여부 확인용)

-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 ※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등)
- ※ 성적증명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포함 필수
- 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각 1부
- 라. 외국어 및 수상 · 자격 · 면허 사본(입사지원서 상 외국어 및 수상 · 자격 · 면허 사항 입력자 필수 제출) 각 1부
- ※ 입사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3급 이상 소지' 기재자의 경우 사본 제출(해당자 필수)
- 마.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습확인서 각 1부(입사지원서 상 경험/경력사항 입력자에 해당)
-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 바.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및 TOPIK II 6급 자격증 각 1부(해당자)
-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해당자)
-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확인서 1부(해당자)
-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7. 기타 안내사항

- 가.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실적에 따라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 나.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본원 「직원채용업무처리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우리 원 채용시험에 대해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다. 접수마감시한에 임박해서는 지원서 접수 폭증으로 인해 입사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시간여유를 두고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 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기록)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마.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마감 시한 전까지는 자유로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 바. 입사지원서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각종 증명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전형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을 축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각 전형별 이의가 있는 경우 본원 「인사관리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 【붙임 3】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dylee@keris.or.kr)
- 자. 채용과정 중 제출 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붙임 4】 양식을 작성 및 서명 날인하여 이메일로 제출 (dylee@keris.or.kr)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요청 시 제출 서류 반환(전자서류 제외)

8. 문의처

선발직렬	채용분야	문의처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AI · 빅데이터	053) 714-0226 / 0303

※ 채용 일정 관련 문의 : 053) 714-0550, dylee@keris.or.kr



[붙임 1]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세부기준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상명대 2캠퍼스(천안), 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등
※ 2020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 기준으로 분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판단

[불임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관련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 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삭제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 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채용 이의신청서

2020년 하반기 정규직(AI·빅데이터 분야)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

수험번호		성명	
생일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내용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二〇一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